

투자권유준칙

제정일자	2019. 09. 18	
개정일자	2022. 04.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 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집합투자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투자자 구분 등

제 4 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법 제 9 조 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과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과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별지 2]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 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과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 7 조(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 원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별지 1] 투자자정보 확인서

②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 및 제11 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별지 3]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거래 확인

제 4 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8 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5]의 적합성판단방식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⑤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7]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 9 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매분기 1 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투자권유절차)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5]의 적합성판단방식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4]의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다음 1호의 투자자에게 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 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8] 적합성 보고서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제 11 조(장외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9] 장외파생상품의 적합성 기준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의 2(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별지 5]의 적합성판단방식과 [별지 10]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a.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b.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i)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ii)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iii)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c. 신탁계약

i) 법 제 103 조 제 1 항 제 1 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ii) 법 제 103 조 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 72 조 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제 13 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4 조의 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 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개정 2022. 04. 28>

제 5 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5 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11] 금융투자상품위험도 평가고려 요소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과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주된 투자 권유의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는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도는 [별지 4]의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5 단계로 분류한다.
- ⑤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6 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8 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3.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 59 조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 내용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제 1 항의 각 호의 사항

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3.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18 조의2(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호 및 제 2 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위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개정 2022. 04. 28>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09. 18부터 제정·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04. 28부터 개정·시행한다.

[별지 1]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 드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	비고
I. 재산상황	1. 월 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① 10% 이하 ② 30% 이하 ③ 50% 이하 ④ 70% 이하 ⑤	
	2. 여유자금 보유여부 ① 3 개월분 미만 ② 3 개월분~6 개월분 ③ 6 개월분~9 개월분 ④ 9 개월분~12 개월분 ⑤ 12 개월분 초과 3. 월소득 현황 ① 100 만원 이하 ② 300 만원 이하 ③ 500 만원 이하 ④ 800 만원 이하 ⑤ 800 만원 초과 4.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① 매우 나빠질 것임 ② 나빠질 것임 ③ 지금과 비슷할 것임 ④ 좋아질 것임 ⑤ 아주 좋아질 5. 총 자산규모(순자산) ① 1 억이하 ② 5 억 이하 ③ 10 억 이하 ④ 50 억 이하 ⑤ 50 억 초과 6. 총 금융자산(부동산제외) 중 총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① 10% 이하 ② 30% 이하 ③ 50% 이하 ④ 70% 이하 ⑤ 70% 초과	
II. 투자경험	1.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p>2.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3.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① 전혀 없음 ② 1년 미만 ③ 3년 미만 ④ 5년 미만 ⑤ 5년 이상</p> <p>4.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Ⅲ. 투자목적</p>	<p>1. 투자목적 ①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②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③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④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⑤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p>	
	<p>2.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①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②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③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3. 투자자금의 성격 ① 생활필수자금 ② 특수목적 자금 마련 ③ 여유자금</p>	
<p>Ⅳ. 금융지식 수준·이해도</p>	<p>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별지 4]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내용 (※주)
1등급	매우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최대 3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집합투자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투기등급채권 등에 최대 3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초자산 또는 준거자산 변동에 의해 구조상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 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 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집합투자기구
<p>(※주)</p> <p>1. 상기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당사의 내부</p>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부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 등 이와 유사한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투기등급채권 등이란 투기등급채권(BB+ 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채권,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 자산, 이러한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8.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12.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적립식 방식)으로 저축하는 경우 위험등급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

13.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14.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별지 5]

적합성 판단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 후,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1. 투자자 답변의 점수화(scoring) 방법

[별지 1] 의 1. 투자자 정보 항목(II-1,II-2,II-4,V,VI항목을 제외)에 대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① ~ ⑤ 또는 ① ~ ④ 의 번호가 각 항목별로 취득한 투자자의 점수가 되고, 각 점수를 총합하여, 54 + 1(기본점수) = 55점 만점 (최저점수 :12점, 최고점수 : 55점)

2. 평가 점수에 의한 투자자 성향 분]

평가점수	투자자 성향
16점 이하	위험회피형
22점 이하	안정성장형
27점 이하	성장형
33점 이하	적극형
33점 초과	위험선호형

3. 투자자 성향별로 적합한 투자권유 대상 집합투자증권 등급

구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중간위험 (3등급)	낮은위험 (4등급)	매우낮은위험 (5등급)
위험회피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성장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형	투자권유불가				
위험선호형					

[별지 6]

적합성 판단 방식(파생상품 등)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5]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함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에 50%초과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모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모든 파생상품 등
만 65세 미만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모든 파생상품 등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내역 및 금액, 보유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		관련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		관련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 인원수 :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규정명 :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경험유무	건수	거래년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6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직 위) (담당자) (서명/인)
 (법인명)

회사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자비스자산운용(주)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자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담당자)

(서명/인)

[별지 8]

적합성 보고서

고객명 :	고객번호 :
▶ 투자정보 확인서 조사결과	
1. 고객연령대	2. 투자예정기간
<i>실제 문항별 고객답변 결과 기재</i>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OOO형	
투자권유상품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 사유	
핵심 유의사항	
<p>▣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 등 필요사항 기재)	

[별지 9]

장외파생상품의 적합성기준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p>*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함. * '경고'위험도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p>				

[별지 10]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 보호 필요성

-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고령투자자들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잔여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첨단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고령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70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합니다.
-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동 기준을 준용합니다.

3.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사리분별능력은 아래 예시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본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사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합니다.

(3)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투자권유 유의상품 예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4)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준법감시인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준법감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 필요

-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ex. 근황 문의) • 투자자금의 성격(ex. 생계자금 해당여부)
-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ex. 부적합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변경 여부)
-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손실가능성, 상품의 기본적 구조 이해 여부) • 사리분별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ex. 말투, 기억수준 등 고려)

(5) 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만일,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합니다.

4.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1)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회사는 고령투자자 응대방법 및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등을 담은 내규를 제정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회사는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가입한 경우
- 과도한 신용거래가 발생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 최근 주문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예: 투자자성향 상향 등)이 있는 계좌
-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계좌

(3)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함

5.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1)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 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조력자와의 상담(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후모니터링 강화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피콜 등을 통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이 기록·유지 하도록 합니다.

[별지 11]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

□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 만한 정량적 요소		
	구분	설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며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 (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이킹 에러, 켄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 만한 정성적 요소		
	구분	설명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의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특정 위험	만기 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